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보

제595호

2007년 8월 20일 월요일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704호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2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70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
공고 6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704호

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8월 13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○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과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·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“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” 선정기준을 현행 전체학년 석차백분율에 의한 선정에서 과목별 성적산출 방식에 근거한 선정기준에 준하여 개정함으로써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통한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 : [붙임 : 일부개정규칙(안) 참조]

○ “장학금 지급대상 선정기준”을 현행 전체학년 석차 백분율에 의한 선정에서 과목별 성적 산출방식에 근거한 선정기준으로 개정함. (안 제2조 내지 제3조)

3. 의견제출

○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주민생활지원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(560-4297) 및 FAX(560-4979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▷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- ▷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▷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**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**

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경우를”을 “최근 학기 이수한 학업성적 중 성취도 “미” 또는 “70점”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교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장 학 금 신 청 서

1. 보호자 인적사항 (세대주)						
주 소		성명	한글			
			한자			
생년월일		주민등록번호				
2. 학생 인적사항						
학 적	학 교		학 년	반	(과)	
성 명	(한글)		(한자)			
생년월일		보호자와의관계				
3. 성적구분						
이수 과목수	“미”이상 과목수 (A)	* 성취도(원점수)				환산점수 (B)/(A)
		계(B)	“수”과목수 ×3점	“우”과목수 ×2점	“미”과목수 ×1점	
4. 가구특성 및 재산사항 등						
중증장애 가정여부	1급() 2급() 중복지장애등()			학생과의 관 계		
재 산	천원 (동산 : 천원, 부동산 : 천원)					
월평균소득			보호구분			
※ 계좌번호 : 은행명(), 번호(), (예금주 :)						
첨부 1. 성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200 학년도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신청합니다.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(인)						
위와 같이 위 학생을 200 학년도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. 200 년 월 일 추천인 학교장(직인)						
인천광역시 구청장(군수)귀하						

인천광역시서구 제2007-709 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[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]

1. 자동차관리법 제10조, 제29조, 제34조 및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, 수취인 부재,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,
2.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007년 8월 17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고기간 : 2007. 8. 17 ~ 2007. 9. 3 (15일간)
2.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		
2. 당사자	성 명 (차량번호)	정명기와 6인 (“불임” 위반차량내역 참조)		
	주 소			
3. 처분의 원인된 사실		(“불임” 참조)		
4. 처분하고자하는내용		과태료 부과 및 점검·정비·원상복구 명령		
5. 법 적 근 거		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		
6. 의 견 제 출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명	교통민원과
	주 소	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(심곡동 244) (☎ 560-4872, FAX 560-4869)		
	기 한	2007년 9월 3일까지		

※ 의견제출시 유의사항

-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, 컴퓨터통신,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컴퓨터통신(yut2000@seo.incheon.kr)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□ 위반차량내역

연번	당 사 자		위 반 사 항			비 고
	성 명	주소(사용본거지)	차량번호	위반내용	위반 법규	
1	정명기	인천시 서구 석남3동 559 경인아파트 라/504		미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 운행	제48조제 1항	
2	새한특수 (주)	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-198	인천80사 3224	붕인탈락	제10조제 3항	
3	함중수	인천시 서구 가정3동 556 (28/4) 길운씨티빌 107 동 106호	인천73고4 944	철재보조범퍼 부착 원동기 임의변경	제29조제 1항 제34조	
4	남북통운 (합자)	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-198	인천80아1 443	에어경음기부착	제29조제 1항	
5	김예중	인천시 서구 석남1동 462-8 (24/1)	80구7712	격벽제거	제34조	
6	박용학외 박진철	인천시 서구 가좌2동 81-22 (1/4) 현대아파트 2동 1104호	인천35더6 677	방향등 청색, 후미등클리어 렌즈, 엔젤아이 설치	제29조제 1항	
7	김경훈	인천시 서구 가정1동 5-93 (12/3) 동우아파트 107동 601호	86부1897	후미등 파손	제29조제1 항	